

중소기업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중소기업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- 다 음 -

1. 상호 : (주)중소기업은행
2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 범위
 - (금융서비스 종류) 은행
 - (주요 내용)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, '실명확인 증표의 사진'과 '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'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
3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
 - (이용자 범위) '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'을 보유한 국내 개인 고객
 - (업무대상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
4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 - (실명확인증표 촬영) 고객이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해 그 이미지를 제출하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·변조 여부 확인
 - (고객 얼굴과 대조·검증) 고객이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그 이미지를 제출하면, 사전에 제출된 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과 특징점 등을 대조·검증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 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

6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

7. 부가조건

- (실명확인증표)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·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한하고,
 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해당 실명확인증표가 위·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것
- (증빙자료 보관) 실명확인 증빙자료(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)의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
- (소비자 보호방안) 소비자 보호방안(분쟁해결방안, 배상방안 등), 서비스 범위,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,
 -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할 것
- (보안성 검토) 동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전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, 안면촬영에 대한 정상 인식(성공)률에 대한 정보와 보안성 검토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 할 것

8. 자료제출,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

-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
 - 혁신금융사업자는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- 감독 및 검사
 - 금융감독원 등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를 감독·검사할 수 있으며,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9. 지정일 : 2023. 7. 19.

10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